

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이병윤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922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5년 08월 11일

발 의 자 : 이병윤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김경훈, 김성준, 김영철,
김원태, 김재진, 김종길,
김태수, 김혜영, 남궁역,
남창진, 민병주, 서상열,
송도호, 신복자, 유정인,
윤영희, 윤종복, 이상욱,
이성배, 이원형, 이종태,
이종환, 정준호, 채수지,
허 훈, 홍국표, 황철규
의원(27명)

1. 제안이유

-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확대에 따라 공간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보안검증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
- 이에 자율주행자동차를 이용한 여객탑승 기술실증 및 유상운송 허가, 한정운수면허 발급 시 보안검증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, “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위원회” 분과로 “보안분과위원회”를 신설하고자 함
- 또한,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과 연계하여 자율주행자동차(버스) 확산 및 대중교통수단 조기 정착 지원을 위해 여객운송사업자가 성능인증을 마친 자율주행자동차(버스) 구매 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위원회의 분과로 보안분과위원회 신설(안 제10조제1항)

- 나. 제11조 운행 준수 관련 조항 중 기존에 정의했던 법령 외에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등을 추가(안 11조제1항)
- 다. 유상운송 허가 및 한정운수면허 발급 신청 시 보안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, 보안검증 사항 신설(안 제12조)
- 라. 「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개정과 연계하여 노선 여객운송사업자가 성능인증을 마친 자율주행자동차 구매 시 재정지원 근거 마련(안 제20조제2항 신설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, 「자동차관리법」, 「도로교통법」 등

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안전분과위원회”를 “안전분과위원회 및 보안분과위원회”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「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자동차관리법」, 「도로교통법」 등 안전운행 관련”을 “「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자동차관리법」, 「도로교통법」,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등 안전운행, 공간정보 및 개인정보의 보호 관련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공간정보 및 개인정보의 유출 방지 피해 최소화를 위한 보안계획서가. 공간정보 및 개인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한 자체 보안 점검 및 대책에 관한 사항
나. 공간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실태에 관한 사항

제12조제2항 중 “안전운행 검증”을 “안전운행 및 보안검증”으로 하고, “안전분과위원회”를 “안전분과위원회 및 보안분과위원회”로, “기술 및

안전운행능력”을 “기술 및 안전운행능력, 보안실태”로 한다.

제12조제3항 중 “기술 및 안전운행능력을”을 “기술 및 안전운행능력, 보안실태 등을”로 한다.

제2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의 확산과 대중교통수단 정착 지원을 위해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 제3조제1호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할 수 있다.
1. 법 제40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마친 자율주행자동차의 구매 비용
 2. 구매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관제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
 3. 기타 시장이 데이터 연계 및 자율주행시스템 성능개선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0조(분과위원회)① 위원회에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세부 기술적 검증 등을 위해 <u>안전분과위원회</u> 를 둔다.	제10조(분과위원회) ① ----- ----- ----- <u>안전분과위원회</u> 및 <u>보안분과위원회</u> -----.
제11조(안전운행 준수) ① 시범운행 지구 내에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연구·시범운행·여객운송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「 <u>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</u> 」, 「 <u>자동차관리법</u> 」, 「 <u>도로교통법</u> 」 등 안전운행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.	제11조(안전운행 준수) ①----- ----- ----- ----- 「 <u>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</u> 」, 「 <u>자동차관리법</u> 」, 「 <u>도로교통법</u> 」, 「 <u>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</u> 」, 「 <u>개인정보 보호법</u> 」 등 안전운행, 공간정보 및 개인정보의 보호 관련 --- ----- -----.
제12조(면허신청 등) ① (생략) 1. (생략) 2. (생략) 가.~바.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12조(면허신청 등) ①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가.~바. (현행과 같음) 3. <u>공간정보 및 개인정보의 유출 방지 피해 최소화를 위한 보안 계획서</u>

현행	개정안
<u><신 설></u>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유상운송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 발급 시 <u>안전운행</u> 검증을 위해 60일(30일 이내의 시범운행기간 포함) 이내의 범위에서 제10조의 <u>안전분과위원회</u>를 통해 자율주행자동차의 <u>기술 및 안전운행 능력</u> 등을 검증할 수 있다.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제2항의 <u>기술 및 안전운행능력</u>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, 법 제9조와 영 제8조 및 「자동차관리법 시행령」 제7조제4항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 및 운행범위 등을 정하여 유상운송을 허가하거나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.	가. <u>공간정보 및 개인정보의 유출</u> 방지를 위한 자체 보안 <u>점검 및 대책</u>에 관한 사항 나. <u>공간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</u>실태에 관한 사항 ② ----- ----- --<u>안전운행 및 보안검증</u>----- ----- ----- <u>안전분과위원회 및 보안분과위원회</u>를 ----- --- <u>기술 및 안전운행능력, 보안실태</u> -----. ③ ----- ----- <u>기술 및 안전운행능력, 보안실태</u> 등을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20조(재정지원) ① (생략)	제20조(재정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0조(재정지원)에 따라 관련 비용 발생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- ☐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2항)
 -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0조(재정지원)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대상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지원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, 국비·시비 매칭 비율 등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분담 비율 등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신기술 발전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구매단가, 운영비용 등 산출비용이 특정되기 어려운 여건을 감안할 때, 현 시점에서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재정분석과장 이선희

추계세제팀장 김중헌

추 계 분 석 관 이설화

☎ 02-2180-7952

e-mail : sseol789@seoul.go.kr

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0조(재정지원)에 따라 관련 비용 발생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- ☐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2항)
 -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0조(재정지원)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대상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지원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, 국비·시비 매칭 비율 등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분담 비율 등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신기술 발전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구매단가, 운영비용 등 산출비용이 특정되기 어려운 여건을 감안할 때, 현 시점에서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재정분석과장 이선희

추계세제팀장 김중헌

추 계 분 석 관 이설화

☎ 02-2180-7952

e-mail : sseol789@seoul.go.kr